

여수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산237 외 1필지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24층 4개동, 총 3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m,세대)

구분	주택형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배정 세대수 (37세대)	입주예정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8571A	84A	136	84.8571	23.3066	108.1637	13	'22년 10월 (예정)
	84.8461B	84B	59	84.8461	24.5185	109.36460	5	
	84.8620C	84C	196	84.8620	23.6965	108.5585	19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				
		84.8571A	84.8461B	84.8620C	대상세대	
		84A	84B	84C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1)	1(0)	4(2)	8(3)	
	장기복무 제대군인	1(0)	-	1(0)	2(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	2(1)	4(2)	9(4)	
	중소기업 근로자	5(2)	1(1)	8(4)	14(7)	
	장애인	전라남도	1(1)	1(0)	1(0)	3(1)
		광주광역시	-	-	1(0)	1(0)
소계		13(6)	5(2)	19(8)	37(16)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단, 주택형별 경쟁이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9.09.26(목)	일간신문 및 여수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홈페이지

			(http://ys-greenwell.com)
견본주택 개관		2019.09.27.(금)	전라남도 여주시 박람회길 1 여주세계박람회 국제관A동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청약	2019.10.02.(화) 08:00 ~ 17:30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19.10.14.(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시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 제3항관련)]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 결과 공급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 불가]

III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IV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하나, 견본주택에서 신청시에는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로서의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팜플렛 및 홈페이지(<http://ys-greenwell.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분양사무실(061-661-1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